

대전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가단1060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정진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의 2018. 3. 22.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18. 3. 26. 접수 제255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 C에게 2,000만 원을 대출기간을 2017. 1. 2.부터 2022. 1. 25.까지, 이자율 연 11.45%, 지연이자율 연 14.4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리금의 상환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2018. 8. 24. 이후부터 원리금 채무를 제때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C의 2019. 6. 27. 현재 대출원리금 7,228,548원[6,477,755원(대여금 20,000,000원 - 13,522,245원)+2018. 8. 25.부터 2019. 6. 27.까지의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750,793원]에 대하여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5692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9. 8. 5. “7,228,548원 및 그 중 6,477,755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9. 21. 확정되었다.

다. C는 2018. 3. 22.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26. 피고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대전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창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2) C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대출금, 피고의 어머니가 증여한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C는 위 아파트 취득에 돈을 투입하거나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데도 2011년 취득 당시 공동 명의 관련된 부부간의 다툼을 피하고자 일시적으로 C와 공동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은 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부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C가 그동안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을 전혀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길연

별 지 목 록

1층의 전물의 표시

대전 서구 동 로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대전 서구 동

월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전물의 표시

건물번호 :

구 조 : 월근콘크리트조

면 적 : 6층 호 84.54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전 서구 동 로 대 9021 평방미터
2. 대전 서구 동 로 대 24248 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33269 분의 33,2293

